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비어업인의 유해해양생물 포획·채취 허용 등〉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427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비어업인의 유해해양생물 포획 · 채취 허용 등	2

I. 제안경위

2025년 3월 28일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서 하역금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이하 “유해해양생물”이라 함)로 인한 수산업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되, 과도한 포획·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업인의 포획만으로는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도하게 증식한 유해해양생물을 제거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의 포획·채취 활동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는 수산자원 포획·채취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사람의 생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이버 등 어업인이 아닌 자가 유해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해양생물 감소를 통한 해양자산 보호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비어업인의 유해해양생물 포획·채취 허용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사람의 생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로 하여금 유해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비어업인의 자격이나 포획·채취 가능한 유해해양생물의 종류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생략) <u><신설></u>	제24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사람의 생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u>

<신 설>	하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로 하여금 유해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해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비어업인의 자격과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할 수 있는 유해해양생물의 종류·개체수 및 포획·채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4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도 하여금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수산업 등의 피해상황, 유해해양생물의 종류 및 개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되, 과도한 포획·채취로 해양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1항¹⁾에서는 「수산업법」 제2조

1)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판매 등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호²⁾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런데, 유해해양생물이 과도하게 증식하고 있어 어업인의 포획·채취만으로는 이를 제거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비어업인 또한 유해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참고로, 유해해양생물로 지정된 현황을 보면, 자포동물 5종, 식물플랑크톤 5종, 태형동물 3종, 극피동물 2종, 식물 3종으로 총 18종이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유해해양생물로 지정되어 있음.

분류군	국명(보통명)	학명
식물플랑크톤	디노피시스	<i>Dinophysis</i> spp.
	슈도니치아	<i>Pseudo-nitzschia</i> spp.
	알렉산드리움	<i>Alexandrium</i> spp.
	차토넬라	<i>Chattonella</i> spp.
	코클로디니움	<i>Cochlodinium polykrikoides</i>
자포동물	노무라입깃해파리	<i>Nemopilema nomurai</i>
	보름달물해파리	<i>Aurelia aurita</i>
	작은부레관해파리	<i>Physalia physalis</i>
	작은상자해파리	<i>Carybdea brevipedalia</i>
	커튼원양해파리	<i>Chrysaora pacifica</i>
극피동물	별불가사리	<i>Asterina pectinifera</i>
	아무르불가사리	<i>Asterias amurensis</i>

2) 「수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

태형동물	관막이끼벌레	<i>Membranipora tuberculata</i>
	세방가시이끼벌레	<i>Tricellaria occidentalis</i>
	자주빛이끼벌레	<i>Watersipora subovoidea</i>
식물	갯줄풀	<i>Spartina alterniflora</i>
	영국갯끈풀	<i>Spartina anglica</i>
	괘쟁이모자반(외국에서 국내로 유입되어 해상을 떠다니는 괘쟁이모자반으로 한정한다)	<i>Sargassum horneri</i>

□ 이에 개정안은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사람의 생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어업인으로 하여금 유해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②유해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비어업인의 자격이나 포획·채취할 수 있는 유해해양생물의 종류·개체수 및 포획·채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수산업 피해를 방지하고, 해양자산 보호 및 해양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여름철의 경우 어업에 해를 끼치는 해파리 등이 특정해역에 전년 대비 9배 정도 증가하여 어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³⁾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유해해양생물의 형태가 유사한 종이 다수 존재하는 점을 감안할 때(첨부1 참고), 비어업인의 포획 활동 과정에서 유해해양생물로 지정

3) ‘물 반 해파리 반’ 경남 해역 비상...“작년 9배”, SBS Biz, 2025년 6월 18일.

되지 않은 종이 오인 포획될 가능성이 있고, 비전문가에 의한 포획·채취는 자원의 남획 및 해양생태계의 교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실제로 국내에서 발견된 해파리는 약 30종, 불가사리는 약 70종에 이르나, 이 중 유해해양생물로 지정된 것은 해파리 5종, 불가사리 2종에 불과하여 현장에서는 구별이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유해해양생물 중 일부는 독성을 지닌 해파리나 적조 생물(식물 플랑크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으며, 장시간 잠수 작업 또는 해상기상 악화 시 비전문가가 수행하는 포획·채취 활동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

□ 다음으로, 현행법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도 하여금 과도한 포획·채취로 해양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여 비어업인의 포획·채취를 허용하고 있는바, 하위법령에서 포획 채취 개체수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참고로, 현재 해양수산부가 ①해파리폴립 제거 사업, ②갯끈풀 제거 및 관리 사업, ③해파리 구제사업 등 유해해양생물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 예산규모는 다음과 같음.

[표] 해양수산부 유해해양생물 관리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사업내용	2025 예산
해파리폴립 제거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	해파리 성체를 포획·채취하지 않고 해파리 폴립(유생)을 제거	1,260
갯끈풀 제거 및 관리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	18년부터 제거를 시작하였으며 18~24년 중에 최대 서식면적(강화도 중심) 38,754 m ² 를 제거	500
해파리 구제	자율관리어업육성	유해생물(해파리)로 인한 어업 활동 피해 방지를 위해 제거 장비 구입, 수매비, 어선 임차료 지원, 해파리 저감 연구 실시	1,820
코클로디니움 적조 제거	양식등 재해대책비	유해생물(적조) 구제를 위한 황토, 장비, 부대경비(선박, 중장비 임차) 등의 지원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시험연구	2,976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및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입장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дай버 등 어업인이 아닌자가 유해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하여, 해양자산 보호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개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종(種)의 오인 포획, 포획·채취의 안전성 등 고려 시 개정안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18

첨부 1

해양생물의 형태적 유사성

□ 다른 종인데 형태적으로 유사한 경우



< 노무라입깃해파리 >

(특징) 강독성, 대형종(최대 2m)
(출현시기 및 분포) 6~12월, 전국



< 유령해파리 >

(특징) 강독성, 중형종(최대 50m)
(출현시기 및 분포) 7~11월, 남해

vs



< 보름달물해파리 >

(특징) 약독성, 중형종(15cm 내외)
(출현시기 및 분포) 4~12월 전국(동해 북부 제외)



< 야광원양해파리 >

(특징) 강독성, 중형종(최대 30cm)
(출현시기 및 분포) 5~7월, 남해, 제주

□ 동일 종임에도 불구하고 형태 변이(개체에 따라 색깔 변이)가 심한 경우



< 아무르불가사리 1 >

vs



< 아무르불가사리 2 >